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51736 판결 [점유회수및손해배상(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517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51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7. 5. 30.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창원)2016나5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별지